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2016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17년 3월 3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현 만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 『이사회규정』 제 13 조 ①을 근거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위원 변경 시까지 연속하여 재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김병일 위원은 2016 년 3 월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1 년 이 되고, 황건호 위원은 재임기간이 1 년 이 됩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에 의거 위원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하되,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총 4인(김병일, 황건호, 홍성일, 최현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인(김병일, 황건호, 홍성일)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김병일 이사가 보수위원회의 대표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홍성일 이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대표이사를 역임 하였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 2016년 12월말 기준]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사 등 출신여부	약력
김병일	이사	사외이사	무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교수<'07~>,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4~'15>, 금융위원회 금융

				발전심의위원회 위원 <'08~'09>, (주)대현 상임감사 <'99~'07>, 재정경제원 서기 관<'95~'99>
황건호	이사	사외이사	유	KB 금융지주 사외이사<'12.3 월~'15.3 월>, 서울대학교 경 영대학 초빙교수<'12.3 월 ~'14.2 월>, 한국금융투자협 회 회장<'09.2 월~'12.2 월>, 한국증권업협회 회장<'04.2 월~'09.1 월>,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사장)<'99.10 월 ~'03.12 월>, 대우증권(주) 부 사장<'96.3 월~'99.9 월>
홍성일	이사	사외이사,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	유	GK 파트너스 부회장(비상 근)<'12.6 월~>, 대우증권 사 외이사<'10.6 월~'12.5 월>, IBK 증권 사외이사<'09.6 월 ~'10.5 월>, 한국투자증권 대 표이사(사장)<'03.6 월 ~'07.5 월>, 한국투자신탁 대 표이사<'00.5 월~'03.5 월>, 신 공항공속도로 대표이사 <'00.3 월~'00.5 월>, 삼성증 권 리테일 영업총괄 부사장 <'99.2 월~'00.2 월>, 삼성증 권 상품법인 및 기업금융본부 장<'96.1 월~'99.1 월>, 삼성 증권 경영지원실장<'92.11 월 ~'95.12 월>, 삼성중공업 경

				영기확실장<'91.3 월~'92.11 월>,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감사팀장<'78.11 월~91.2 월>
최현만	이사	사내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유	미래에셋생명(주) 수석부회장 <'12~'16>, 미래에셋증권(주) <'99~'12>,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이사<'97~'99>

[舊미래에셋증권 2016년 1월 ~ 3월]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사 등 출신여부	약력
변재상	이사	사내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12~'16>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홍성일	이사	사외이사	유	<'12~ >GK 파트너스 부회장 (비상근) <'10~'12>대우증권 사외이사 <'09~'10>IBK 증권 사외이사 <'03~'07>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 <'00~'03>한국투자신탁 대표이사
박정찬	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무	<'13~'16>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09~'13>연합뉴스 사장

[舊미래에셋증권 2016년 3월 ~4월]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사 등 출신여부	약력
변재상	이사	사내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12.6월~'16.4월>미래에셋 증권 대표이사
정윤택	이사	사외이사	유	<'15~>동성 코퍼레이션(주) 사외이사 <'14~>재단법인 정이있는 장학재단 이사장 <'02~'14>(주)효성 재무본부 장(사장) <'02~'04>효성캐피탈(주) 대 표이사 <'97>효성그룹 파이낸스 사 장
조래형	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07~'15> 팬택 비상임감사 <'02~'07>팬택엔큐리텔 상 임감사 <'81~'01>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 투융자업무 총괄 영 업본부장

[舊미래에셋증권 2016년 5월 ~12월]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사 등 출신여부	약력
----	----	--------------------------------	----------------	----

정윤택	이사	사외이사	유	<'15~>동성 코퍼레이션(주) 사외이사 <'14~>재단법인 정이있는 장학재단 이사장 <'02~'14>(주)효성 재무본부장(사장) <'02~'04>효성캐피탈(주) 대표이사 <'97>효성그룹 파이낸스 사장
조래형	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07~'15> 팬택 비상임감사 <'02~'07>팬택엔큐리텔 상임감사 <'81~'01>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투융자업무 총괄 영업본부장
이광섭	이사	사내이사	유	<'08~'16>미래에셋증권 상근감사위원 <'86~'08>금융감독원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 1)}	임기 만료일
김병일	사외	위원장	16.2.3	18.3.16
황건호	사외	위원	16.3.25	18.3.16
홍성일	사외	위원	16.12.30	18.3.16
최현만	사내	위원	16.11.4	18.3.16

주 1) 최초 선임일 기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 하여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6 년 12 월 19 일 개최된 제 48 기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결정하고 성과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6 년 12 월 19 일 개최된 제 48 기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결정하고 성과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6 년 12 월 19 일 개최된 제 48 기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정의와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 비율, 이연지급기간, 이연지급액환수 등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성과보수 중 1 억원을 이상 또는 본인의 연봉을 초과 하는 금액의 40%를 이연지급 하며,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을 3 년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및 고액 성과보수 대상자(해당 사업연도 성과급 누계액이 연 3 억원 이상인 자)는 성과보수 총액의 60%를 이연지급 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6 년 12 월 19 일 개최된 제 48 기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6 년 12 월 19 일 개최된 제 48 기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 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6년 12월 19일 개최된 제 48기 2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은 한국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내 모든 조직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제 44 조에 따른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6년 12월 19일 개최된 제 48기 2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수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 2016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67명	대표이사, 부문대표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9명	운용 및 IB 부문 인력

[舊미래에셋증권, 2016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94명	대표이사, 부문대표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66명	운용 및 IB 부문 인력

10) 기타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김병일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3 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 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16 년에는 총 2 회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3 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성과보수 및 이연대상자를 결정하였고, 성과급 집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미래에셋대우의 성과보수제도가 회사의 재무상황,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는지 평가 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미래에셋대우]

가) 제 2016 년도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16 년 3 월 24 일(목) 오전 10 시 00 분

[안건 통지일 : 2016 년 3 월 21 일(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장수	홍성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案)	동의	동의	동의	가결
2015 년 등기임원 성과보상 지급(案)	동의	동의	동의	가결
2015 년 집행간부 등 성과 보상 지급(案)	동의	동의	동의	가결

2015년 직원 성과보상 지급(案)	동의	동의	동의	가결
2016년 집행간부 보수한도 승인(案)	동의	동의	동의	가결
2016년 전문위원 보수한도 승인(案)	동의	동의	동의	가결

나) 제 2016년도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16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안건 통지일 : 2016년 12월 14일(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장수	홍성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2016년 직원 성과보상 지급기준 확정(案)	동의	동의	동의	가결

[舊 미래에셋증권]

가) 제 2016년도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16년 03월 10일(목) 오전 10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16년 03월 04일(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홍성일	박정찬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성과급 지급제도 심의의견	동의	동의	동의	가결

1) 제 17기 성과급 집행액 보고의 건, 제 17기 성과급 이연현황 보고의 건

나) 제 2016 년도 제 2 차 보수위원회 : 2016 년 10 월 26 일(수) 오전 10 시 00 분

[안건 통지일 : 2016 년 10 월 20 일(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윤택	조래형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미래에셋대우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이연대상자 변경의 건	동의	동의	동의	가결

다) 제 2016 년도 제 3 차 보수위원회 : 2016 년 12 월 19 일(월) 오전 10 시 00 분

[안건 통지일 : 2016 년 12 월 13 일(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윤택	조래형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성과급 지급제도 심의의 건	동의	동의	동의	가결

1) 제 18 기 성과급 집행액 보고의 건, 제 18 기 성과급 이연현황 보고의 건

4) 평가

해당사항 없음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수익, 손익 영업목표 달성률 등 정량항목과 시장상황, 경쟁사 실적, 총위험액 대비 수익률 등 정성항목을 주요 성과측정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과측정 지표에 따른 결과를 부서/개인별 상여율에 연동시켜 성과측정과 보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 평가의 경우 담당조직별 조직평가(담당 부문/본부 목표달성 · 평가등급 반영)를 적용하였으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하여 업적평가(수행한 업적 기술), 역량평가(기본역량, 직무역량, 정책역량)의 두 가지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성과보상 역시 등기임원은 전사 조직성과보수와 경영진(등기임원 제외) 성과보수에 연동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외 임원은 전사경영성과급과 평가결과에 따른 담당 조직(사업부문/본부) 성과보상 지급규모를 반영하여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각 조직별 손익을 기준으로 성과보상 재원을 산출한 뒤, 상기 명시된 조직평가 항목 등을 반영한 평가등급을 바탕으로 성과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해당 조직의 성과보상 금액을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당사의 성과 및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보수액 중 40%~5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현금 및 주식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규정,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수위원회(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연된 변동보수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 및 주식(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액 중 이연하지 않고 즉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연되는 금액은 주식(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60% 이연대상자의 경우 변동보상액 중 40%는 현금으로 당해년도에(T 년)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 10%는 1년(T+1)후에 이연
주식과 함께 지급하며, 40% 이연대상자의 경우 당해년도에(T 년) 50%의 현금과 10%의 주식을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주식으로 3년간 이연지급 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미래에셋대우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 손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2016 년 보수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사안이 없었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거하여 이연제도 적용 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미래에셋대우]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5년)	2,814.6	3,886.6	0.72	2,989	0.94
당해년도 (2016년)	2,993.3	1200.1	2.49	2,903	1.03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전년도 : 2015.01~2015.12

- 당해년도 : 2016.01~2016.12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

- 전년도 : 2015.01~2015.12

- 당해년도 : 2016.01~2016.12(합병전 미래에셋대우 기준(12/29))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5년)	1,525.0	2,261.0	0.67	1,801	0.8
당해년도 (2016년)	1,521.0	209.4	7.26	1,791	0.8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전년도 : 2015.01~2015.12

- 당해년도 : 2016.01~2016.12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

- 전년도 : 2015.01~2015.12

- 당해년도 : 2016.01~2016.12(합병 미래에셋대우 손익)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미래에셋대우]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전년도 (2015년)	보수총액	359.6	416.4	939.5	640.8	538.3	570.2
	성과보수액	198.8	182.7	295.0	228.1	170.0	213.7
당해년도 (2016년)	보수총액	259.4	335.0	790.3	535.0	375.2	449.1
	성과보수액	92.3	92.2	136.7	96.7	60.3	99.4

주 1) 작성기준 :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주 2) 작성기준 : 임원(이사이상), 사원(상담역, 기타, 다이렉트 포함)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전년도 (2015년)	보수총액	254.5	259.2	253.6	280.2	308.8	157.4
	성과보수액	126.8	81.8	70.0	77.2	67.9	22.6
당해년도 (2016년)	보수총액	259.2	276.3	249.6	300.8	293.2	127.7
	성과보수액	118.0	70.2	56.6	60.2	46.8	14.3

주 1) 작성기준 :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주 2) 보수총액: 급여(1월~12월)실지급여액 + 성과보수(회계연도에 결정된 성과급)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미래에셋대우]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3)}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15년)	경영진	37	63.7	111.9	53.3
	특정직원	77	67.4	165.7	90.9
당해년도 (2016년)	임원	67.0	111.7	36.0	17.2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29.0	28.4	45.0	23.0

주 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이하 동일)

주 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액'으로 분류

주 3) 전년도 : '15.1월 ~ 12월, 당해년도 : '16.1월 ~ 12월(이하 동일)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 1)}	기본급 ^{주 2)}	성과보수액 ^{주 3)}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15 년)	경영진	11	22.0	34.0	15.7
	특정직원	145	95.2	123.8	35.2
당해년도 (2016 년)	임원	94	123.5	96.1	17.1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166	109.9	78.1	10.1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미래에셋대우]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 1)}	주식연계 상품 ^{주 2)}	기타	
전년도 (2015 년)	경영진	111.9	56.0	56.0		
	특정직원	165.7	74.5	91.2		
당해년도 (2016 년)	임원	30.9	15.4	15.4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36.0	18.6	17.3		

주 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 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 주 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 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 주 1) 주 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으로 기재
- 주 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 1)}	주식연계 상품 ^{주 2)}	기타
전년도 (2015년)	경영진	34.0	18.3	15.7	
	특정직원	123.8	123.8		
당해년도 (2016년)	임원	96.1	79.0	17.1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78.1	78.1		

주 1) 변동보수액 : 2016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

주 2) 주식연계상품: 주식으로 이연되는 성과급의 합계액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미래에셋대우]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5년)	경영진	95.4	9.2	86.1
	특정직원	200.5	86.1	114.4
당해년도 (2016년)	임원	84.5	24.7	59.7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130.5	51.0	79.6

주 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주 3) '00년 발생 변동보상액을 익년도 1/4 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상액을 '00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상액에 포함(이하 동일)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5년)	경영진	37.5		37.5
	특정직원	63.6		63.6
당해년도 (2016년)	임원	32.5		32.5
	금융투자업	38.8		38.8

	무담당자			
--	------	--	--	--

주 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금액

주 2) 해당연도 말 기준 누적된 금액 중 지급된 금액을 ‘지급확정’ 으로, 분류함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미래에셋대우]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5년)	경영진	95.4	10.1	85.3		
	특정직원	200.5	77.1	123.4		
당해년도 (2016년)	임원	84.5	8.8	75.5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130.53	32.35	98.18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5년)	경영진	37.5			37.5	
	특정직원	63.6	63.6			
당해년도 (2016년)	임원	32.5			32.5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38.8	38.8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미래에셋대우]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5년)	경영진	95.4	69.5	20.7	5.1	-	-
	특정직원	200.5	165.7	30.4	4.4		
당해년도 (2016년)	임원	84.5	18.4	53.1	10.8	2.2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130.53	45.03	69.37	14.11	2.03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전년도 (2015 년)	경영진	37.5	15.1	16.2	6.2	-	-
	특정직원	63.6	26.1	23.5	14.1	-	-
당해년도 (2016 년)	임원	32.5	19.2	9.3	4.0	-	-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38.8	19.4	12.5	6.9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16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16 년(t 기) 발생분, '15 년(t-1 기) 발생분, '14 년(t-2 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성과조정

[미래에셋대우]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15 년)	경영진	0.3		0.3
	특정직원	1.5	0.8	1.5
당해년도 (2016 년)	임원	14.7		14.7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27.6	2.9	27.6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주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 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 4)}
		직접적 조정 ^{주 2)}	간접적 조정 ^{주 3)}		
전년도 (2014 년)	경영진	-2.0		-2.0	-2.0
	특정직원	-2.7		-2.7	-2.7
당해년도 (2016 년)	임원	3.1		3.1	3.1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23.7	23.7		23.7

주 1) 미래에셋대우 이연 성과급 지급 시 주가 변동으로(이연시기보다 지급시기 주가가 상승) 이연보수액이 확대되어 -로 표기함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미래에셋대우]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5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	-	-
	금융투자업	-	-	-
	무담당자	-	-	-

[舊 미래에셋증권]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5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	-	-
	금융투자업	-	-	-
	무담당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